

자진출국 신고절차 (Voluntary Departure Verification)

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을 명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, 주한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-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, DHS-HSI)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,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DHS-HSI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

- 작성된 G-146, I-392, 또는 I-210 Form 원본
만약 미국에서 출국 시 Form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, 미국에서 출국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.
-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및 (해당되는 경우)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사본
-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또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 원본
- (해당되는 경우) I-94 (Arrival/Departure record)
- [Contact 양식](#)

보내실 주소:

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
주한미국대사관
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 (DHS-HSI)
(우편번호: 03141)

대사관에 서류 접수 시 일양택배를 통해서 보내셔야 합니다. 택배서비스 요금 및 배달에 관한 안내는 아래 택배회사에 직접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일양 택배

전화: 02) 3277-9453/9531/9534

웹사이트: <http://www.ilyanglogis.com/functionality/Reservation.asp>

주의: 편의점에 있는 택배 서비스(일양택배 포함)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보내실 경우 대사관으로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.

DHS-HSI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,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뷰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된 Form의 복사본을 교부합니다. Form 원본은 그 양식을 발행한 미국 국토안보부로 발송되게 됩니다.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5 근무일 정도 걸리며,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

동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hsiseoul@state.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